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10. 26.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년 10월 19일 김윤정 의원 외 8명
- 나. 회부일자 : 2016년 10월 20일
- 다. 상정일자 : 제20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16년 10월 26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이학래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진, 화재 및 건축물 공사장 관련 피해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난 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때 효율적인 재난안전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현장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상황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현장 통합지휘소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21조의2(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등)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재난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재난 현장의 실무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3.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은모)

- 동(同) 조례안은 2016.10.20.~10.24.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상황관리 위주의 재난 대응체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구청장이 모든 재난상황을 본부에서 총괄·지휘하고 있으며, 재난 현장에서는 현재도 부구청장이 현장에서 발생한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재난대책을 총괄·지휘하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이번 조례에서는 재난사고 발생 시 재난현장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의 본부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부구청장의 통솔·지휘 아래 재난현장 상황 파악 보고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 재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처리사항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를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재난대비책 마련은 물론 이번 조례개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